##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70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 조은희 • 백종헌 • 박정하

이성권 • 신동욱 • 이만희

강선영 • 이달희 • 김용태

김소희 · 김예지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의 발화지점이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구동축전지)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배터리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배터리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단계에서부터 탈거 이후 단계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기재하 도록 의무화하였으나(2025. 2. 17. 시행), 배터리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제조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국민이 배 터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 • 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

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 등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 록 자동차등록증에도 배터리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구 매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동차등록증을"을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로 한다.

제8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제조일자, 제품명 및 모델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률 제1998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2항제1호의2 중 "제8조의2를"을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전기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동축전지 정보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신규등록) ① (생 략)      | 제8조(신규등록) ① (현행과 같 |
|                        | 흥)                 |
|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        | ②                  |
| 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        |                    |
| 한 사항을 적고 <u>자동차등록증</u> | 제8조의2제3항에          |
| <u>을</u> 발급하여야 한다.     | 따른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    |
|                        | 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
|                        |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       |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   |
| 의 고지의무) ①・② (생 략)      | 의 고지의무) ①・② (현행과   |
|                        | 같음)                |
| <u>&lt;신 설&gt;</u>     | ③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
|                        |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
|                        | 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에    |
|                        |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
|                        | 제조일자, 제품명 및 모델명 등  |
|                        |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구동    |
|                        | 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    |
|                        | 로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    |
|                        | <u>다.</u>          |

## 법률 제1998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신 설>

2. ~ 6. (생 략) ③ ~ ⑥ (생 략)

| 법률 제19980호 자동차관리법          |
|----------------------------|
| 일부개정법률                     |
|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
| 1의2. <u>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u> |
| 으=                         |
|                            |
|                            |
|                            |
|                            |
|                            |
|                            |
|                            |
|                            |
|                            |
| 1의3.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         |
| 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
|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고지하             |
| 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